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4. 11. 15. ~ 12. 11,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협의의 대상 및 내용
2. 의결제출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을 갖추는 것
2.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보조재 및 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갖추는 것

것

3.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및 화장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 관하여 7년 이상 연구 또는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그린바이오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된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그린바이오기업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립 연월일	신고 연월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고인은 이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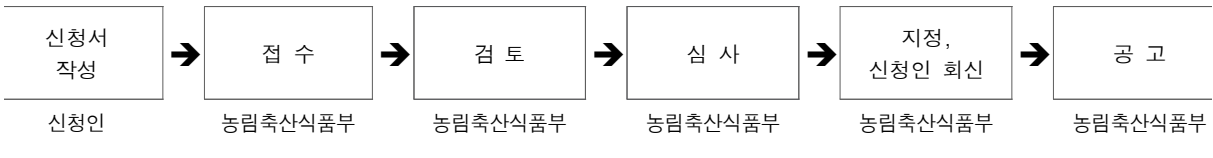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 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사	➔	지정서 발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